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0년 4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종목	세목
무배당 (①) 안심 (②) 케어 (③) 연금보험	적립형
	거치형

연금지급형태	
생존연금	종신연금 [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110세보증, 기대여명보증]
케어연금	종신연금

- ※ 동 상품은 상품 명칭에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 (②) 또는 (③)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 ※ '기대여명'이란 「통계법」 제 18 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가입시점 기대여명표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함. 다만,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5년으로 함.

2.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형태,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형태, 보험기간 및 가입나이

구분		내용
연금지급개시나이(Y)		45세 ~ 90세
연금지급형태		생존연금 종신연금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Y))년)보증형, 110세((110세-연금지급개시나이(Y))년)보증형, 기대여명보증형]
		케어연금 종신연금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Y)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Y)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가입나이	일시납	20세 ~ (Y-3)세 (최대 85세)
	3년납	20세 ~ (Y-5)세
	5년납	20세 ~ (Y-8)세
	7년납	20세 ~ (Y-9)세
	10년납 이상	20세 ~ (Y-납입기간)세 (최대 73세)

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적립형	3/5/7/10년납 이상	월납
거치형	일시납	일시납

※ 다만, 전기납의 경우 10년을 최소 납입기간으로 함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 적립형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한다. 50 만원을 최소보험료로 한다.
- 거치형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한다. 1,000 만원을 최소보험료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적립형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적립액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 거치형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의 총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추가납입보험료 총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 자동인출금액의 합계

※적립액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6. 기본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 가. 기본보험료가 200 만원을 초과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본보험료에서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을 할인하여 영수하는 방법(할인형) 또는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하는 방법(가산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매월 기본보험료	기본보험료 할인금액
200 만원 이하	0 원
200 만원 초과 300 만원 이하	기본보험료 중 200 만원 초과부분의 1.8%
300 만원 초과 500 만원 이하	18,000 원 + 기본보험료 중 300 만원 초과부분의 1.9%

500 만원 초과	56,000 원 + 기본보험료 중 500 만원 초과부분의 2.0%
-----------	--------------------------------------

- 나. 할인형을 선택한 경우 ‘가’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 다. 가산형을 선택한 경우 ‘가’에 따른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을 기본보험료 실제 납입일(선납을 할 때에는 해당 납입회차 월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용한다.
- 라.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기본보험료의 감액 등을 이유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가’ 내지 ‘다’를 적용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 가.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해당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약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0. 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인출 최고한도는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고,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 및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 및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다.
- 다.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
- 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가’의 해지환급금은 적립액 인출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잔여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의 월대체보험료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적립액 자동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거치형에 한함)

- 가. 적립액 자동인출서비스라 함은 계약자가 정한 기간동안 계약자가 정한 주기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이하 '자동인출금액'이라 합니다)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동인출금액은 해지환급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계약자는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보험연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적립액 자동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적립액 자동인출서비스 신청시 계약자는 지급기간, 지급주기, 자동인출금액, 지급시작일을 설정해야 한다.
-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액 자동인출서비스가 종료된다.
- (1) 계약자가 적립액 자동인출서비스의 종료를 신청한 경우
 - (2) 계약 후 경과기간이 10 년 이내인 경우 해당 자동인출금액을 포함한 인출금액의 합계(적립액의 인출금액과 자동인출금액의 합계)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총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총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을 초과한 경우(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감액후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 감액비율과 동일비율로 감액된 추가납입보험료 및 적립액의 인출금액 및 자동인출금액을 적용합니다)
 - (3) 매회 자동인출금액 차감 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장래의 보장 계약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라. '다'의 (2) 및 (3)에 따라 적립액 자동인출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 예정일 15일 이전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한다.
- 마. 자동인출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 및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 및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 할 수 있다.
- 바. 자동인출금액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이 보험의 연금계약에 적용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나. '가'의 공시이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 일 적용한다.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한다.
- 다.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 (1)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text{내부지표} \times (1 - \alpha) + \text{외부지표} \times \alpha$$

(2) 내부지표

(가) 내부지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내부지표}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times 100$$

- (주) 1. I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2. E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3. A_{12} : 산출시점 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A_0 : 산출시점 직전 1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나)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다) 내부지표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3) 외부지표

- (가) 외부지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 = \text{국고채(5년)수익률} \times \beta_1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수익률} \times \beta_2 + \text{통화안정증권(1년)수익률} \times \beta_3$$

- (주) 국고채 가중치, 회사채 가중치, 통화안정증권 가중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ta_1 : \text{국고채 가중치} = \frac{a}{a+b+c}$$

$$\beta_2 : \text{회사채 가중치} = \frac{b}{a+b+c}$$

$$\beta_3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 = \frac{c}{a+b+c}$$

- a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b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c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 (나) 국고채(5년) 및 회사채(무보증 3년, AA-)와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다) 세부 지표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4) 내부지표와 외부지표의 가중치

-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의 가중치}(\alpha) = \frac{A/B + C}{A + C}$$

$$\text{내부지표의 가중치}(1 - \alpha) = 1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 라.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한다.
- 마. ‘나’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영세칙을 따른다.
- 사.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나.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 다. 계약자는 ‘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4.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15.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시점
3년납	신청불가
5년납	3년
7년납	4년
10년이상(다만, 전기납 제외)	5년
전기납	신청불가

- 나. ‘가’의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이후의 납입기일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에 따라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나이가 연금지급나이보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

입원료시점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된다.

- 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차감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의 차감이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 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총 5회를 한도로 하며, 1회 신청당 12개월(최소 3개월)을 최고 한도로 한다. 또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의 신청은 월단위로 가능하다.
- 마.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바. 회사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의 종료(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신청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더 이상 차감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6.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함)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계약자의 신청에 따른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17.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전환에 관한 사항

가.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의 피보험자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이하 '전환후계약의 피보험자'라 한다)에 한하며, 연금전환 신청 당시 전환후계약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 이상 85세 이하 이어야 한다.

나.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는 주계약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18.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적립형: 기본보험료 × 12 × Min(보험료 납입기간, 10)
- 거치형: 일시납보험료

다.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라.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4-14 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2) 이 보험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대비 90%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마. 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차감금액(계약관리비용)과 기본보험료의 차감금액(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의 합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사.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서비스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본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3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청약서의 서식